

의료원 직제규정

제 정	1994. 4. 25.
1차개정	1994. 8. 1.
2차개정	1994. 9. 1.
3차개정	1995. 2. 15.
4차개정	1995. 3. 24.
5차개정	1995. 9. 1.
6차개정	1995. 12. 1.
7차개정	1997. 2. 19.
8차개정	1998. 3. 24.
9차개정	1998. 7. 8.
10차개정	1998. 11. 26.
11차개정	1999. 3. 1.
12차개정	1999. 7. 13.
13차개정	1999. 10. 15.
14차개정	2001. 4. 20.
15차개정	2001. 5. 16.
16차개정	2002. 4. 19.
17차개정	2002. 7. 30.
18차개정	2004. 2. 20.
19차개정	2004. 8. 19.
20차개정	2004. 10. 22.
21차개정	2004. 12. 14.
22차개정	2005. 4. 18.
23차개정	2005. 8. 30.
24차개정	2005. 11. 1.
25차개정	2006. 2. 21.
26차개정	2006. 3. 21.
27차개정	2006. 5. 25.
28차개정	2006. 7. 25.
29차개정	2006. 10. 24.
30차개정	2007. 2. 21.
31차개정	2007. 5. 29.
32차개정	2007. 8. 28.
33차개정	2009. 9. 1.
34차개정	2010. 8. 24.
35차개정	2010. 11. 25.
36차개정	2011. 2. 22.
37차개정	2011. 9. 30.
38차개정	2012. 5. 22.
39차개정	2013. 10. 18.
40차개정	2014. 5. 22.
41차개정	2014. 8. 19.
42차개정	2015. 2. 16.
43차개정	2015. 5. 15.
44차개정	2015. 8. 13.
45차개정	2016. 2. 23.
46차개정	2017. 2. 9.
47차개정	2017. 5. 23.

- 48차 개정 2018. 2. 12
- 49차 개정 2018. 5. 24
- 50차 개정 2019. 2. 14
- 51차 개정 2019. 8. 26
- 52차 개정 2020. 2. 10
- 53차 개정 2020. 8. 21
- 54차 개정 2021. 2. 8
- 55차 개정 2021. 6. 23
- 56차 개정 2021. 8. 20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92조 제6항에 의하여 아주대학교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기본 행정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9, 2013. 10. 18, 2014. 5. 22>

제 2 조(적용범위) 의료원의 직제는 「정관」에 특별히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 10. 18>

제 3 조 <삭 제 >

제 4 조(기구의 장의 직무권한) 각 기구의 장은 소속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5 조(예산조치와 병행) 예산상의 조치 없이는 새로운 기구를 설패할 수 없다.

제 2 장 기 구 <삭 제 2002. 7. 30>

제 6 조 <삭 제 2002. 7. 30 >

제 3 장 의료원장

제 7 조(의료원장) ① 의료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교육, 연구, 진료 및 행정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 2. 21>

② 의료원장 산하에는 첨단의학연구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실, 정보혁신실,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및 부속병원을 둔다. <개정 2002. 7. 30, 2004. 12. 14, 2006. 2. 21, 2007. 2. 21, 2007. 5. 29, 2010. 11. 25, 2015. 2. 16, 2020. 2. 10, 2020. 8.21>

제 7 조의 2 (의료원 운영회의) ①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료원 운영회의를 두며, 의료원장, 의과대학장, 간호대학장, 병원장, 첨단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정보혁신실장과 의료원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2. 16, 2020. 8.21>

② 의료원 운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3. 10. 18]

제 8 조(제 위원회) ① 의료원장은 교육, 연구, 진료 및 관리상의 주요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8>

② 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기획조정실 <개정 2002. 7. 30>

제 9 조(기획조정실) ① 의료원장 직속으로 기획조정실을 두며, 기획조정실에는 실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실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 7. 30, 2014. 5. 22, 2015. 2. 16, 2020. 8.21>

② 기획조정실장은 의료원 전반에 관한 업무를 조정, 통제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부실장은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 7. 30, 2014. 5. 22>

③ 기획조정실에는 기획팀, 감사팀을 두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 <개정 2002. 7. 30, 2004. 8. 19, 2014. 5. 22, 2015. 2. 16, 2019. 2. 14, 2020. 8.21>

[제5장 신설 2004. 12. 14]

제 5 장 연구지원실 <삭 제 2015. 2. 16 >

제 9 조의 2 <삭 제 2015. 2. 16 >

[본조 신설 2004. 12. 14]

[제6장 신설 2015. 2. 16]

제 6 장 대외협력실

제 9 조의 3 (대외협력실) ① 의료원장 직속으로 대외협력실을 두며, 대외협력실에는 실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실장을 둘 수 있다.

② 대외협력실장은 의료원 대외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부실장은 실장을 보좌한다.

③ 대외협력실에는 국제진료센터, 홍보팀, 대외협력팀을 둔다.

④ 국제진료센터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홍보팀과 대외협력팀에는 각 팀장을 둔다.

[본조 신설 2015. 2. 16]

[제7장 신설 2020. 8.21]

제 7 장 정보혁신실

제 9 조의 4 (정보혁신실) ① 의료원장 직속으로 정보혁신실을 두며, 정보혁신실에는 실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실장을 둘 수 있다.

- ② 정보혁신실장은 의료원 전산·정보화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부실장은 실장을 보좌한다.
- ③ 정보혁신실에는 정보기획팀, 정보관리팀, 의료빅데이터센터를 둔다.
- ④ 의료빅데이터센터에는 소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소장을 둘 수 있으며, 정보기획팀과 정보관리팀에는 각 팀장을 둔다.

제 8 장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개정 2020. 2. 10, 2020.8.21>

- 제 10 조(대학 및 대학원)** ① 각 대학에는 학장을 두며, 대학원에는 대학원장을 둔다. <개정 2006. 2. 21, 2007. 2. 21, 2007. 5. 29>
- ② 학장 및 대학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07. 2. 21>
- ③ 의과대학에는 학장을 보좌하는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 연구부학장을 둔다. <신설 2006. 3. 21, 개정 2006. 10. 24, 2011. 9. 30>
- ④ 각 대학에는 교학팀을 두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 단,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의 행정업무는 의과대학 교학팀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6. 2. 17, 2006. 3. 21, 2007. 2. 21, 2007. 5. 29, 2010. 11. 25, 2019. 2. 14, 2020. 2. 10>
- ⑤ 의과대학의 학장 산하에 의학교육실과 임상교육센터를 두며, 각각 실장과 소장을 둔다. <신설 2006. 3. 21, 개정 2010. 8. 24, 2011. 9. 30>
- [제목 개정 2006. 2. 21, 2007. 2. 21]

- 제 11 조(학과 및 각 교실)** ① 의과대학에는 의학과를, 간호대학에는 간호학과를 둔다. <개정 2006. 2. 21, 2012. 5. 22>
- ② 의학과에는 해부학교실, 생리학교실, 생화학교실, 약리학교실, 병리학교실, 미생물학교실, 예방의학교실, 인문사회의학교실, 법의학교실, 의료정보학과, 뇌과학과, 소화기내과학교실, 순환기내과학교실, 호흡기내과학교실,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신장내과학교실, 중앙혈액내과학교실, 감염내과학교실, 알레르기내과학교실, 류마티스내과학교실,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신경과학교실, 정신건강의학교실, 피부과학교실, 외과학교실, 흉부외과학교실, 정형외과학교실, 신경외과학교실, 성형외과학교실, 산부인과학교실, 안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비뇨의학교실, 재활의학교실, 마취통증의학교실, 영상의학교실, 방사선종양학교실, 핵의학과학교실, 진단검사 의학교실, 응급의학과학교실, 직업환경의학교실, 가정의학과학교실, 치과학교실, 의학유전학과를 둔다. <개정 2002. 7. 30, 2004. 8. 19, 2006. 2. 21, 2007. 2. 21, 2007. 8. 28, 2009. 9. 1, 2010. 8. 24, 2011. 2. 22, 2012. 5. 22, 2013. 10. 18, 2018.2.12>
- ③ <삭제 2012. 5. 22>
- ④ 보건대학원에는 보건학과를 둔다. <개정 2007. 2. 21>
- ⑤ 임상치의학대학원에는 임상치의학과와 임상구강보건학과를 둔다. <신설 2010. 11. 25, 개정 2011. 9. 30, 2019.8.26>
- ⑥ 각 학과에는 학과장, 부학과장을, 각 교실(과)에는 주임교수 및 과장을 둔다. <개정 2002. 7. 30, 2006. 3. 21, 2010. 11. 25, 2012. 5. 22>
- ⑦ 각 교실(과)의 주임교수(과장)는 해당 교실(과) 또는 관련 교실(과)의 주임교수(과장)와 부속병원의 해

당과 또는 관련과의 임상과장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25>

[제목변경 2012.5.22]

제 12 조(의학문헌정보센터) ① 대학 및 대학원 지원기관으로 의학문헌정보센터를 두며, 의학문헌정보센터에는 소장을 둔다. <개정 2004. 12. 14, 2006. 2. 21, 2007. 2. 21>

② 의학문헌정보센터에는 의학문헌정보운영팀을 두며, 의학문헌정보운영팀에는 팀장을 둔다.

제 12 조의 2 <삭 제 2015. 2. 16>

[본조 신설 2010. 8. 24]

제 13 조 <삭 제 2004. 12. 14>

제 9 장 부속병원<2020. 8.21>

제 14 조(부속병원) ① 부속병원에는 원장과 진료부원장, 교육인재개발부원장, 행정부원장을 둔다. <개정 2002. 7. 30, 2007. 8. 28, 2009. 9. 1, 2012. 5. 22, 2014. 8. 19, 2015. 5. 15, 2016. 2. 23>

② 원장은 부속병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한 통제, 조정 등 병원전반에 관한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진료부원장은 진료 전반에 관하여, 교육인재개발부원장은 교직원 교육업무에 관하여, 행정부원장은 병원 경영 및 행정업무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하며, 각각 진료부, 교육인재개발부, 행정부 산하부서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2. 7. 30, 2007. 8. 28, 2009. 9. 1, 2012. 5. 22, 2014. 8. 19, 2015. 5. 15, 2016. 2. 23>

④ <개정 2002. 7. 30, 2007. 8. 28, 2013. 10. 18, 2015. 5. 15> <삭제 2016. 2. 23>

⑤ 원장 직속으로 간호본부와 치과병원을 두며, 간호본부에는 간호본부장을 치과병원에는 치과병원장을 둔다. <신설 2016. 2. 23>

⑥ 원장 직속으로 건강증진센터, 권역외상센터, 병원경영팀, 임상시험센터, 임상연구윤리센터, 적정진료관리실, 현대아주의원, 혁신의료기기실증지원센터를 두며, 건강증진센터, 권역외상센터, 임상시험센터, 임상연구윤리센터, 혁신의료기기실증지원센터에는 소장을, 병원경영팀에는 팀장을, 적정진료관리실에는 실장을, 현대아주의원에는 의원을 둔다. 다만, 건강증진센터에는 소장을 보좌하는 부소장과 진료운영팀장 및 관리운영팀장을, 임상시험센터와 혁신의료기기실증지원센터에는 소장을 보좌하는 부소장과 운영팀장을, 적정진료관리실에는 실장을 보좌하는 부실장과 운영팀장을, 현대아주의원에는 의원장을 보좌하는 운영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 7. 30 2007. 8. 28, 2009. 9. 1, 2011. 2. 2, 2012.5.22, 2013. 10. 18, 2014. 5. 22, 2015. 5. 15, 2018.2.12., 2018.5.24., 2021. 2. 8.> <항번호 변경 2016. 2. 23>

제 15 조(진료부) ① 진료부원장 산하에는 암센터장, 내과부장, 외과부장을 둔다. <신설 2016. 2. 23>

② 진료부에는 진료부서로 내과부(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신장내과, 중앙혈액내과, 감염내과, 알레르기내과, 류마티스내과, 급성기일반내과), 외과부(위장관외과, 대장항문외과, 간이식 및 간담도외과, 췌담도외과, 소아외과, 유방외과, 갑상선내분비외과, 이식혈관외과, 외상외과, 응급중환자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

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 수술실, 집중치료실, 암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둔다.

<개정 2002. 7. 30, 2004. 2. 20, 2006. 7. 25, 2007. 2. 21, 2007. 8. 28, 2009. 9. 1, 2010. 11. 25, 2011. 2. 22, 2012. 5. 22, 2013. 10. 18, 2014. 8. 19, 2015. 2. 16, 2015. 5. 15, 2016. 2. 23, 2018.2.12., 2020. 2. 10>

③ 진료부에는 진료지원부서로 감염관리실, 수혈관리실, 진료협력센터, 약제팀, 영양팀, 보건의료정보팀, 사회사업팀, 의용공학팀을 두며, 암센터에는 암관리기획팀을 둔다. <신설 2016.2. 23, 개정 2017.2.9., 2017.5.23., 2019.2.14., 2021.6.23., 2021.8.20.>

④ 내과부 및 외과부 각과, 진료 각과, 각실 및 각 센터에는 과장, 실장 또는 소장을 둘 수 있으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 <개정 2006. 5. 25, 2009. 9. 1, 2011. 2. 22, 2014. 8. 19, 2015. 2. 16, 2015. 5. 15, 2016. 2. 23>

⑤ 각 센터의 소장은 임상과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⑥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에는 과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사장을, 감염관리실, 수혈관리실, 진료협력센터에는 실장 또는 소장을 보좌하는 운영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 7. 30, 2007. 2. 21, 2016. 2. 23, 2021.6.23.>

[제목변경 2016. 2. 23] [항번호 변경 2016. 2. 23]

제 15 조의 2(진료센터) ① 부속병원에는 진료부 산하에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진료센터를 둘 수 있으며, 진료센터의 세부조직과 설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2. 23>

② 진료센터에는 센터장, 부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임상과장을 겸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5. 22.]

제 16 조(교육인재개발부) ① 교육인재개발부에는 교육수련부, 임상약학교육실, 아카데미팀, 간호교육팀을 둔다. <개정 2017. 2. 9>

② 교육수련부와 임상약학교육실에는 각각 부장과 실장을 둘 수 있다.

③ 아카데미팀, 간호교육팀에는 팀장을 두며, 교육수련부에는 운영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2. 9>

[전문개정 2016. 2. 23.]

제 17 조 < 삭제 > 2016. 2. 23 >

제 18 조 < 삭제 > 2016. 2. 23 >

제 19 조 < 삭제 > 2002. 7. 30 >

제 20 조(행정부) 행정부에는 총무팀, 인사복지팀, 원무팀, 보험팀, 구매관리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 및 법무팀을 두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 <개정 2002. 7. 30, 2007. 8. 28, 2013. 10. 18, 2015. 2. 16, 2015. 5. 15, 2016. 2. 23, 2017.5.23> [제목변경 2016. 2. 23.]

제 20 조의 2(간호본부) 간호본부에는 외래간호팀, 병동간호1팀, 병동간호2팀, 집중간호팀, 응급간호팀, 외상간호팀, 수술간호팀을 두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 <개정 2017. 2. 9>

[본조신설 2016. 2. 23.] [중전 제20조의 2는 제20조의 4로 이동 2016. 2. 23]

제 20 조의 3(치과병원) ① 치과병원에는 치과진료센터를 두며, 치과진료센터에는 진료부서로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를 둔다.

② 치과진료센터에는 센터장을, 각 과에는 임상과장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23.] [중전 제20조의 3은 제20조의 5로 이동 2016. 2. 23]

제 20 조의 4(부설기관) ① 「정관」 제92조 제4항에 의거하여 부속병원 진료부 산하에 지역진료에 필요한 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센터에는 소장을 둔다. <개정 2007. 5. 29, 2013. 10. 18, 2016. 2. 23>

② <삭 제 >

③ 소장은 센터에 관계된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삭 제 2004. 12. 14>

[제20조의 2에서 이동, 중전 제20조의 4는 제20조의 6으로 이동 2016. 2. 23]

[제9장 신설 2004. 12. 14]

제 10 장 연구기관<2020. 8.21>

제 20 조의 5(연구기관) ① 연구기관은 의료원에 내·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구소 및 센터를 말하며, 이를 통할하기 위해 의료원에는 첨단의학연구원을 둔다. <개정 2005. 10. 28, 2006. 5. 25, 2006. 7. 25, 2006. 10. 24, 2015. 2. 16>

② 다만, 업무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대학(원), 부속병원 산하에 별도의 연구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기관 조직 및 설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2. 16>

③ <삭 제 2006. 10. 24>

[제20조의 3에서 이동 2016. 2. 23]

[제10장 신설 2015. 2. 16]

제 11 장 첨단의학연구원<2020. 8.21>

제 20 조의 6(첨단의학연구원) ① 첨단의학연구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② 첨단의학연구원장은 연구원 산하 연구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한다.

③ 첨단의학연구원에는 산하 연구기관, 실험동물연구센터, 연구행정팀, 의료기술사업팀을 두며, 실험동물연구센터에는 소장을 연구행정팀과 의료기술사업팀에는 팀장을 둔다. 다만 실험동물연구센터에는 소장을 보좌하는 부소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 2. 9., 2021. 2. 8.>

④ 전항의 산하 연구기관이라 함은 의료원의 연구활동을 위해 첨단의학연구원에 설치하는 연구소 및 센터로서, 산하 연구기관의 종류 및 설패·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 2. 16] [제20조의 4에서 이동 2016. 2. 23]

제 12 장 보직 및 임기<2020. 8.21>

제 21 조(보직임기 및 해임) ① 보직 교원에 대한 보직 및 임기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아주대학교 직제 규정 및 보직교원 임기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 2. 16>

②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직원의 보직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단, 유고가 있어 후임을 임명할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2. 16>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면권자는 보직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 2. 16>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징계에 회부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제목 개정 2015. 2. 16]

제 21 조의 2(자격 등) ① 첨단의학연구원의 부원장, 기획조정실의 부실장, 대외협력실의 부실장, 정보혁신실의 부실장, 각 대학의 학과장, 부학과장, 의학문헌정보센터 소장, 각 교실(과) 주임교수(과장), 부속병원의 치과병원장, 내과부장, 외과부장, 교육수련부장, 임상과장, 암센터장, 권역응급의료센터소장, 권역외상센터소장은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0. 24, 2009. 9. 1, 2012. 5. 22, 2013. 10. 18, 2014. 5. 22, 2014. 8. 19, 2015. 2. 16, 2016. 2. 23, 2019. 2. 14, 2020. 8.21>

② 제1항외의 부서단위 (부)실장, (부)소장은 교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임용교원을 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4>

③ 의원장은 교원으로 보하되 특별임용교원 또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된 비교원 의사(축탁의사)를 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4>

④ 간호본부장은 교원이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2. 7. 30, 2005. 4. 18, 2006. 2. 21, 2006. 3. 21, 2007. 8. 28, 2016. 2. 23, 2019. 2. 14>

⑤ 각 팀장, 기사장 및 운영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단, 사업목적 달성이거나 전문성을 위하여 특별임용교원 또는 계약된 직원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8.30, 2009.9.1., 2019.2.14., 2021. 2. 8.>

⑥ 각 부서에는 필요한 경우 부서장을 보좌하는 파트장을 둘 수 있으며, 파트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사업목적 달성이거나 전문성을 위하여 계약된 직원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 8. 30, 2006. 5. 25, 2009. 9. 1, 2019. 2. 14>

제 13 장 보 칙<2020. 8.21>

제 22 조(직무대리) 이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보직자의 유고시에는 직무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28>

제 23 조(위임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각 기구의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료관계 법령에 의한 병원설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원전에 필요한 때에는 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추진본부 운영에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구표) 의료원의 기구는 <별표>와 같다.

③ (다른 규정의 개정) 1.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QI실장” 을 “기획조정실장”, “진료부원장” 을 “제1진료부원장, 제2진료부원장” 으로 한다.

2. 의료원 예산 및 회계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QI실” 을 “기획조정실”, “QI실장” 을 “기획조정실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명된 학장보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부학장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11학년도 임상치의학대학원 입학생은 임상치의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본다.

부 칙(학법대우 제12-91호 : 2012. 5.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3-221호 : 2013. 10.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4-104호 : 2014. 5.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4-204호 : 2014. 8.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법대우 제14-381호 : 2015. 2. 16.)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의료원 보수규정 제11조 중 별표2의 직책수당에서 연구지원 실장을 삭제하고, 첨단 의학연구원장을 추가하며 수당은 병원장급으로 하며, 대외협력실장은 기획조정실장급으로 한다.
-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명된 기획담당부실장은 기획조정실부실장으로, 대외협력담당부실장은 대외협력실부실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학법대우 제15-121호 : 2015. 5.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5-246호 : 2015. 8.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법대우 제15-487호 : 2016. 2. 23.)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법대우 제16-487호 : 2017. 2.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법대우 제17-129호 : 2017. 5. 23.)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학법대우-183호 : 2018. 2. 12.)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학법대우-74호 : 2018. 5. 24.)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법대우-357호 : 2019. 2. 14.)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법대우 기획팀-194호 : 2019. 8.26.)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384호 : 2020. 2. 10)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219호 : 2020. 8.2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414호 : 2021. 2. 8.)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179호 : 2021. 6.2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246호 : 2021. 8.20.)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